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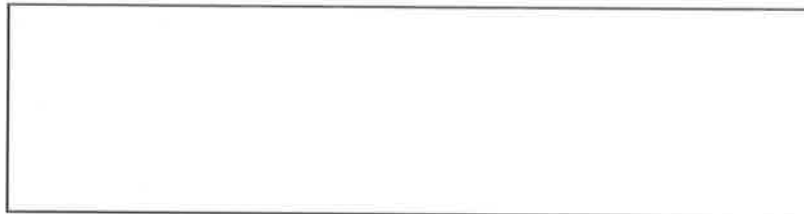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8 - 61 - 540호

안 건 명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18. 11. 7.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등) 및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호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민원(675개 유통점)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75개 유통점을 선정하여 지원금 과다 지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접수('16. 2월 이후)된 민원을 분석하여 전국 7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1개점이 추가되어 최종 76개점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기간) 민원 해당월 및 '18. 1. 1.(금) ~ 사실조사 현재일

나. 행위사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 금액 등) 및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영업을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8월 23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6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 및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영업장 등에 게시하도록,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 및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은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 및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 및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00월 0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마.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지 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4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단말기유통법 제2조1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한다.

나.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1월 7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